

##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안내

○ 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회로 분할 적용됩니다.

### ▶ 10회 분할고지 적용 기준

- 적용 월: 2021년 4월

- 대상: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 9,570원\*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

\* 2021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: 9,570원

○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.

※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일시 납부(사전 제외)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 고지되지 않습니다.

(EDI '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' - '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' 화면에서 4.15일까지 신고 → 적용 제외 신청 후, 4.19일부터 '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 신청서' 화면에서 정산 대상자의 정산보험료 분할 횟수를 직접 선택하여 신고 가능)

※ 4.19일 이후 분할 취소(일시납) 및 횟수 변경을 원할 경우, '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 취소 신청서' 화면에서 신청방법 참고하여 신고